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화자원 운영지침

제정 2008. 7. 1

개정 2010. 9.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화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13>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및 부서와 부속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0.9.13>

제3조(계획수립 및 평가) 연초에 정보처리센터는 정보화자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익년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과 그 자료, 전산망, 서버, PC, 소프트웨어 등을 말함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기반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집합을 말함
3. “전산망”이라 함은 정보의 획득, 처리, 저장 및 전파 등을 위해 이용되는 유무선의 전자적 매개체를 말함
4. “서버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을 동작시키기 위한 물리적 컴퓨터시스템과 그 운영체제를 말함
5. “소프트웨어”라 함은 정보처리를 위해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유의미한 코드의 집합체를 말함
6.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화자원을 내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유무형의 행위를 말함

7. “재해복구”라 함은 정보화자원의 이용불가한 상태에서부터 원상으로 복구함을 말함

제2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5조(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보시스템은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일반행정정보시스템 및 연구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행정정보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0.9.13>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은 학부생 학사행정정보와 대학원생 학사행정정보로 구성되며, 각각 학적, 등록, 수강신청, 성적, 졸업 등 학사업무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일반행정정보시스템은 교직원의 인사, 급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매자재 관리, 시설관리, 연구업적관리, 발전기금관리, 생활관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3. 연구행정정보시스템은 연구과제, 산학협력단 재무회계 및 인사업무 등의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제6조(시스템구축 및 관리) ①각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책임은 정보처리센터에 있다

②각각의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재구축은 해당정보 운영 및 관리책임부서의 요구 또는 정보처리센터의 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 정보처리센터 운영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2. 관련부서의 소요예산 확보
3.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성 검토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정보운영 및 관리) ①각각의 정보시스템 정보의 운영은 해당정보의 입출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모든 입출력 정보의 관리책임은 입출력하는 해당 부서에 있다. 단, 입출력되는 원천정보의 관리책임은 해당정보의 입력부서에 있다.

②각각의 정보 운영 및 관리책임 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해 정보처리센터에 해당 입출력 프로그램의 수정,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한다.

1. 해당부서에서는 정보 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2. edcm.snut.ac.kr에 접속 후 해당 요구사항 입력
3. 정보처리센터의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후 승인

제3장 전산망 운영

제8조(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산망은 자체 구축한 캠퍼스전산망과 인터넷서비스통신사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외부 인터넷망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0.9.13>

제9조(구축 및 관리) ①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책임은 정보처리센터에 있다.

②전산망의 증설 또는 변경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 정보처리센터 운영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2. 소요예산 확보
3.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성 검토
4. 기타 정보처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캠퍼스내의 건물을 신·증축할시 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설부문은 시설담당 기관에서 시행하되 정보처리센터와 사전협의한다.

④정보처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 범위는 건물 각 실의 아웃렛(outlet)까지로 한다.

제10조(장비실협조) ①전산망 구축을 위해 전산망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필요한 2m² 이상의 독립된 공간과 전원을 제공하고 장비보호 및 보안에 협조한다.

②설치된 장비실은 임의로 이전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정보처리센터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한다.

제11조(무선랜사용) ①부득이 필요하여 무선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처리센터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 이용한다.

②제①항에 의거 설치한 무선중계기는 반드시 접속 암호를 설정토록 하여 무단 사용자가 임의로 무선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③정보처리센터장과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무선중계기로 인하여 전산망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해당 장비를 철거케 하거나 직접 철거한다.

제12조(IP주소관리) ①교직원은 IP주소를 할당 받아 전산망을 이용하되 교육, 연구 및 업무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기타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배정 받은 IP주소만 사용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IP주소는 반납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센터소장은 정보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IP를 차단한다.

③IP주소 이용 시 해당 IP로부터 야기된 민원 및 정보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IP주소 신청책임자 및 사용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IP주소는 공인 IP주소와 비공인 IP주소 중 하나만 배정하며, 배정 기준은 정보처리센터장이 용도를 판단하여 정한다.

제13조(도메인관리) ①도메인 등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P주소에 한하고, IP주소 1개에 최대 5개까지 도메인명(호스트)을 발급한다. <개정 2010.9.13>

②도메인 신청은 소속 책임자(담당교수 및 부서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목적은 본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에 한한다.

③제②항의 목적 외로 도메인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철회한다.

제14조(전산망관리) ①정보처리센터는 전산망의 무결성, 기밀성 및 상시 가용성을 위해 통합관리토록 한다.

②인터넷을 이용한 외부로부터의 접속은 방화벽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 및 원격접속은 방화벽 또는 인증시스템에 의해 통제한다.

③전산망 보안담당자는 방화벽, 침입탐지 및 기타 보안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전산망 위해를 사전에 제거한다.

④전산망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전산망 서비스를 차단한다

1. 대내외 정보시스템 해킹 및 스팸메일 발송 행위
2.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전산망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해커들에 의해 악용되는 서비스 포트
4.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보시스템 또는 윈도우 자동패치(PMS)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시스템
5. 음란 및 증권 사이트 등 교육·연구에 부적합한 사이트 접속
6. 기타 전산망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

제15조(이용 및 책임) ①**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전산망을 이용한다. <개정 2010.9.13>

1. IP주소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사용자)
2. 검토 후 배정(정보처리센터)
3. IP주소 입력 후 전산망 이용(사용자)

②**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0.9.13>

1. 정당하게 배정된 IP주소 만 사용
2.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의 설치
3. 윈도우패치프로그램 설치(PMS)
4. 불법SW 설치 금지

제4장 서버시스템 운영

제16조(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운영 관련 서버 장비로 구성된다. <개정 2010.9.13>

제17조(관리 및 협조) ①정보처리센터는 서버시스템실에 설치된 주요 서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보수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해당 서버의 효율적 관리 유지를 위해 이용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정보보안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처리센터의 요구에 따른다.

③정보처리센터는 주요 서버들이 설치된 기계실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18조(부대시설) 정보처리센터는 서버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

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공조시설 및 전기시설 등의 부대시설 관리 유지에 노력한다.

제5장 공용소프트웨어 운영

제19조(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공용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함)는 학내에서 일반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PC용 또는 서버용 소프트웨어로 한다.

<개정 2010.9.13>

제20조(확보 및 관리) ①정보처리센터는 소프트웨어를 확보 및 관리하며, 이를 위해 소요예산을 예측, 확보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프트웨어의 확보 및 출납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②분야별 전문 소프트웨어는 해당 이용 기관 또는 부서에서 확보 및 관리하 되,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제21조(이용 및 제한) ①**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은 소프트웨어 대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처리센터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의 e-대학 프로그램자료실에 접속하여 학내에서 교육, 연구 및 업무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개정 2010.9.13>**

②소프트웨어는 위 제①항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이용이 제한된다.

제22조(점검 및 교육) ①정보처리센터는 학내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을 파악,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정보처리센터는 소프트웨어 이용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고, 정품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이용지원 및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방지에 노력한다.

제6장 정보보안

제23조(사전예방) 정보화자원에 대한 학내외의 불법 이용, 파괴, 유출, 변조 및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24조(조치 및 협조) ①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 외부기관 및 학내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학내 정보보안사고 대응팀을 운영한다.

②정보보안사고 대응팀은 학내 전공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관련 전공 학과 학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및 교육) 학내 정보보안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매년 2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7장 재해복구

제26조(재해복구계획수립) 정보처리센터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화자원에 대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 처리절차를 문서화한다.

제27조(백업 및 보관) 정보시스템, 전산망 및 서버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중요 자료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2개 이상의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한다.

제28조(복구 및 협조) 유무형의 재해로 인하여 정보화자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외부기관 또는 학내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제29조(기록유지) 모든 재해복구 처리내용은 정해진 양식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유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